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요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병역법에서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삭제 등 반영(별표 1 제8호)
-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개정(별표 1 제11호)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및 조건 신설 등(별표 1 제14호, 15호, 16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별표 1] 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복무자로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	---

[별표 1] 8. 11. 14.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 ----- ----- ----- -----.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1. ----- ----- -----제16호까지의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 202 - 5431